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19674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10조, 제428조, 제539조, 제542조, 상법 제639조 제1항, 제2항, 제651조, 제659조,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196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3. 8 선고 2001나11583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정AA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BA)

【피고,상고인】 C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BB)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8. 선고 2001나11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345 판결,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CA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등 참조), 계약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채권자는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또는 이미 체결된 보증계약에 터잡아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계약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보증인이 이미 보증서를 교부하여 보증채권자가 그 보증서를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계약보증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보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가 보증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증인을 기망하였고,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권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이거나, 혹은 보증채권자가 보증인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출하는 보증계약 체결 소요 서류들이 진정한 것인지 등을 심사할 책임을 지고 보증인은 그와 같은 심사를 거친 서류만을 확인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증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데, 보증채권자가 그와 같은 서류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탓으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가지고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구 CA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인 소외 인광DA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발급한 계약보증서는 결국 공사도급계약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인바,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은 소외 회사의 반복되는 공사중단 등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중 피고의 보증한도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와 위 공사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공모하여 피고에게 위 공사가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사정을 숨기고 계약신청서에 소외 회사가 1996. 11. 12. 원고들로부터 처음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것처럼 허위의 무사고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였고 피고가 이에 속아 착오를 일으켜 위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어서 피고는 기망으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보증금지급채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판시 피고 주장과 같은 소외 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경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보증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여 원고들은 이에 터잡아 소외 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게 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니 그와 같은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보증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인 원고들이 보증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원고들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이거나, 혹은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소외 회사가 제출하는 보증계약 체결 소요 서류들이 진정한 것인지 등을 심사할 책임을 지고 피고는 그와 같은 심사를 거친 서류만을 확인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그와 같은 서류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탓으로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취소를 가지고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민사소송법 제187조 위반 또는 민법 제542조 소정의 채무자 항EA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